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관리의 직선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8492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규정
(안 제8조의2 신설)

- 1)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이사장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되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는 회원투표, 총회 및 대의원 선출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정규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를 “선거일 전전 사업연도 총자산 평균 잔액이 2,000억원 미만인 해당하는 지역금고와 지역금고 외의 금고(직장금고)”로 정함.
- 3) 자산규모나 적은 지역금고나, 경쟁이 거의 없는 직장금고의 경우에는 직선제 의무화에 제외하게 되어 선거비용 절감 등 업무의 효율화

가 기대됨.

나. 새마을금고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 현실화(안 제7조)

1) 현행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기준은 2011년 9월 9일 개정되어 조정된 것으로 현재 금고의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가) 현재는 1)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1명, 2)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명 이하였으나,

나) 앞으로는 1)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경우 1명, 2)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경우 2명 이하, 3) 5,000억원 이상인 경우 3명 이하로 변경하려고 함.

3) 현재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므로 현실 반영이 기대됨.

다. 새마을금고의 간부직원(전무·상무)을 둘 수 있는 기준 현실화(안 제10조)

1) 현행 전무와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기준은 1998년 2월 24일 개정을 통해 조정된 것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무와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규모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 가) 전무를 둘 수 있는 금고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를 15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함
- 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를 8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함
- 3) 현재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므로 현실 반영이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18. ~ 2022. 3. 18.)
3) 행정규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1,000억원”을 “2,000억원”으로, “결과가”를 “결과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7조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1,000억원”을 “5,000억원”으로, “결과가”를 “결과 등이”로 한다.

2. 자산이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2명 이하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를 말한다.

1. 선거일 전전 사업연도 총자산 평균 잔액이 2,0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금고
2. 지역금고 외의 금고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고”를 “금고: 1,0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8

0억원”을 “500억원”으로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업에 이용 중인 부동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2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또는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중 “중앙회”를 “후보등록일 전일까지 중앙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을 “후보등록일 전일까지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중앙회장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5천만원 이하의 기탁금을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탁금액, 기탁금의 귀속·반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회장”을 “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감독업무”를 “지도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위원장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제3호·제4호”를 “위원장 및 제2항제3호·제4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2일에 동시 실시하는 이사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고의 상근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고의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이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금고의 간부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고의 간부직원(전무·상무)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유지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앙회의 부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의 부회장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상근임원) 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산은 직전 사업 연도 평균 잔액으로 계산한 총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상근임원) ----- ----- ----- ----- ----. ----- ----- -----.
1. 자산이 500억원 이상 <u>1,000억</u> <u>원</u>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9 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 가 <u>결과가</u>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1명 <u><신 설></u>	1. ----- <u>2,000억</u> <u>원</u> ----- ----- -- <u>결과 등이</u> ----- ----- --
2. 자산이 <u>1,000억원</u> 이상인 금 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 른 경영상태 평가 <u>결과가</u> 행 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을 충족하는 금고: 3명 이하	2. <u>자산이 2,000억원 이상 5,000</u> <u>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u> <u>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u> <u>가 결과 등이 행정안전부장관</u> <u>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u> <u>금고: 2명 이하</u>
	3. ---- <u>5,000억원</u> ----- ----- ----- <u>결과 등이</u> - ----- -----

<신 설>

제10조(금고의 직원)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간부직원으로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인 금고로서 재무구조·경영실적 등이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고로 한다.

1. 전무를 둘 수 있는 금고

가.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150억원

나. 주된 사무소가 시(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10

제8조의2(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를 말한다.

1. 선거일 전전 사업연도 총자산 평균 잔액이 2,000억원 미만인 해당하는 지역금고

2. 지역금고 외의 금고

제10조(금고의 직원) ① -----

-----.

1. ----- 금고: 1,000억원

<삭 제>

<삭 제>

0억원

다. 주된 사무소가 읍·면(광
역시 또는 시에 설치된 읍
· 면을 포함한다)에 소재
하는 경우: 80억원

2.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 : 80
억원

② ~ ④ (생략)

제12조(금고의 사업) ① ~ ③ (생략)

<신설>

제29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생략)

<신설>

제30조의2(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 ① 법 제64조의2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다만, 재

<삭제>

2. ----- 500
억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금고의 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업에 이용 중인 부동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29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또는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0조의2(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 ① -----

-----.

임 중인 임원이 그 직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회 임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사람
2.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② (생략)

<신설>

제31조(사업) ①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법 제67조제1항제7호”로, “금고”는 “중앙회”로, “중앙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국가나 공공단체”로 본다.

② (생략)

제43조(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 구성) ① (생략)

-----.

1. 후보등록일 전일까지 중앙회

2. 후보등록일 전일까지 공무원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회장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5천만원 이하의 기탁금을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탁금액, 기탁금의 귀속·반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사업) ① -----

-- 제12조제3항 및 제4항--. --

-----.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중앙회 <u>부회장</u>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중앙회 이사가. 나. (생략) 다. 금고 <u>감독업무</u>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1명 4. (생략) ③ (생략) ④ <u>제3항</u>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u>제2항제3호·제4호</u>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② ----- <u>이사</u> ----- ----- -----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 <u>지도업무</u>-----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u>위원장 및 제3항</u>----- ----- . ---- <u>위원</u> <u>장 및 제2항제3호·제4호</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946